



[별표1]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(방문요양.목욕.간호)

○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본인일부부담금(15%)	구 분	금액(원)	본인부담금(15%)
30분	16,630	2,495	150분	48,250	7,238
60분	24,120	3,618	180분	54,320	8,148
90분	32,510	4,877	210분	60,530	9,080
120분	41,380	6,207	240분	66,770	10,015

○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 액 (원)	본인일부부담금(15%)
차량이용(차량내)	84,670	12,700
차량이용(가정내)	76,340	11,451
차량미이용	47,670	7,151

○ 방문간호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 액 (원)	본인일부부담금(15%)
30분 미만	40,760	6,114
30분이상~60분미만	51,110	7,667
60분 이상	61,490	9,224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(방문요양1~2등급 4시간, 3~5등급 3시간 기준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본인부담금 (15%)	310,485	580,440	218,370	201,270	172,740	96,555
요양 가능시간	27일*4시간	24일*4시간	26일*3시간	24일*3시간	21일*3시간	주야간보호 주 5 회

*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이 결정,
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 25%초과~보험료 순위 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	9%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 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	6%
기초수급권자	0%